

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[]지급 결정 통지서
[]부지급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를 합니다.

사업장관리번호			
사업체명		대표자	
소재지	(전화번호:)		
검정종목(등급)		인정연월일	
계좌번호			
결정내용	[] 지급	[] 부지급	[] 부분지급
부지급(부분지급) 결정사유			

지원금 지급명세

구분	신청액	정산액	지급 결정액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직인

안내사항

-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